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법시행령증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 건 ㉠

2004년 4월 1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현 재
장 관

○대통령령 제18350호

증권거래법시행령증개정령

증권거래법시행령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를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로 하며, 동조제7호중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당해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

다)”으로 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2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동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5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제5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제5조의4제2항제2호”를 “제5조의4제2항제3호”로 한다.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제5조의8을 제5조의9로 하고, 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등) ①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중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회사나 유가증권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그 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2.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그 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제6조제3항중 “제5조의5제1항제3호 및 제5조의8제2항”을 “제5조의5제1

항제4호 및 제5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목의 사항

제9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조의4제2항제3호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제12조의7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제84조의8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를 말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8호를 삭제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5조제2호 본문중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를 “제2조의3제7호의 유가증권, 수익증권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중 “통화, 유가증권, 통화·유가증권의 가격 또는 이자율”을 “통화, 유가증권, 일반상품(선물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화·유가증권·일반상품의 가격 또는 이자율”로 한다.

제37조의7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4조의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금융감독원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83조제3항제4호중 “자본금의 100분의 20”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또는 1,000억원”으로 한다.

제83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중전의 제9호)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제6항 각호의 부분 후단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8호”로, “동항제8호”를 “동항제9호”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2조원”을 “1조원”으로 한다.

1. 대표이사 및 이사의 제5조의8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법 제18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말한다)

제8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15(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등) ①법 제188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 법의 위반행위나 위반행위의 강요 또는 제의(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이라 한다)받은 사실

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그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3. 그 신고 또는 제보를 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와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다.

제84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취득계약

제84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

호중 “양수 또는 양도”를 각각 “양수·양도”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최근 사업연도”를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9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를 제외한다.

제84조의8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84조의7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84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의23의 제목“(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를“(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9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4.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제84조의24의 제목“(감사위원회 및 최대주주와의 거래 등)”을“(주요 주주 등과의 거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 및 제4항(중전의 제3항)중 “법 제191조의19제1항”을 각각 “법 제191조의19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전의 제4항)중 “법 제191조의19제1항제1호”를 “법 제191조의19제2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중 “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를 “법 제191조의19제2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전의 제6항)중 “법 제191조의19제2항제1호”를 “법 제191조의19제3항제1호”로 한다.

①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학자금·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

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제84조의27제6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제90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88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벌칙) 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제84조의8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에서 결의(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체결)하는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

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및 분할·분할합병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영업의 양수·양도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4조의8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이유

기업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이 개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되어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과 이사의 확인·서명을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임원·주요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등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다는 사실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내부

6

회계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함(영 제5조의8 신설).

나. 증권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회계 또는 재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계 및 재무관련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함(영 제37조의7제2항 신설).

다.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83조의15 신설).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로 임원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법인인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영 제84조의24제1항, 동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 건 인

2004년 4월 1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이 현 재
장 관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1호중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을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조의4제2항제2호중 “자산총액(신설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를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